

---

# 유 · 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(안)

---

2023. 7. 28.

영유아교육·보육통합추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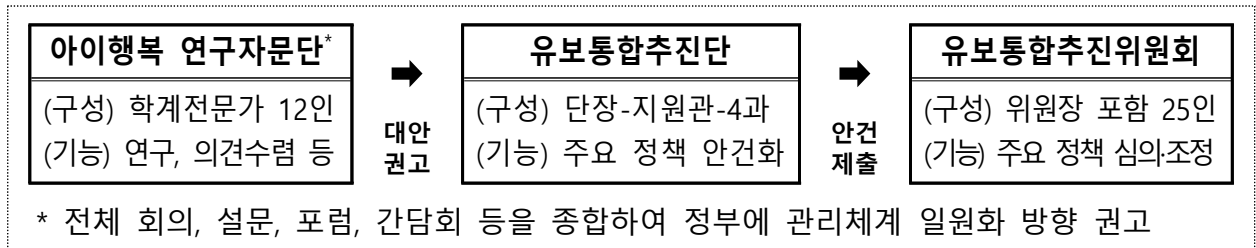
# 목 차

I. 유보통합 추진 상황 .....	1
II. 정책 환경 분석 .....	2
III. 비전 실현 10대 정책(안) .....	3
IV. 유·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(안) .....	5
V. 향후 일정(안) .....	7
[붙임]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조치 필요 사항 .....	8

# I. 유보통합 추진 상황

□ ‘유보통합 추진방안(1.30, 교육부·복지부)’에 따라 주요 과제 추진 중

○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연구자문단-추진단-위원회 추진체계 구축(1.31~)



○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(9개)으로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·보육의 질 개선 추진

※ 선도교육청 주요 과제 :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, 유·어·초 연계 교육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, 실내·외 안전환경 조성, 유·보 교사연수, 유아학비 지원 등

○ 대국민 거주지 기반 유치원·어린이집 현황 정보 제공(7.14.), 행정용 지역별 수급 정보 제공(6.16.)으로 학부모 편의 증진 및 체계적 수급관리 추진

※ 월 단위 대국민 읍면동 기준 유치원 추가모집·어린이집 입소대기인원 등 정보 제공, 행정용 행정동·법정동별 영유아 수 및 유치원·어린이집 정현원 정보 제공

○ 통합모델(교사자격·양성, 교육과정, 시설·설립 등) 관련 연구자문단 논의 등 추진

※ ('23) 쟁점 논의 → ('23.말) 통합모델 시안 공개 → ('24) 의견수렴 및 확정

□ 정책관계자와의 소통,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

○ 유치원·어린이집 현장 방문(2.6, 2.17, 7.12\*), 기관 단체대표 등 간담회, 공무원 설문, 시도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소통(5~7월)

\* 교육부·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,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·보육 질 제고 방안 의견 청취

○ 교육부, 복지부, 시·도교육청, 시·도가 참여한 4자 ‘공동선언’\*(7.14)

\* 중앙지방이 “재정확보, 인력 지원 등 노력,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.”는 공동선언

## II. 정책 환경 분석

### □ 외부 환경

- (기회) 역대 정부 최초, 국정과제\* (교육부·복지부)로 유보통합을 추진, 젊은 세대, 학부모 등의 기대가 높은 상황

\* (교육부) (84)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, (복지부) (46)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

- (위기) 통합모델 등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“그림” 제시가 아직 없어\*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, 의구심도 존재

\* '유보통합 추진방안'(1.30)은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후 논의 과제 및 일정을 제시

### □ 내부 여건

- (약점) 현장의 기대에 부응, 의구심을 해소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쟁점 논의 몰입, 과거\*와 같이 갈등만 심화 우려

※ 박근혜 정부, (1단계) 즉시 할 수 있는 것, (2단계) 규제환경 정비, (3단계)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, 3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추진단 해체

- 그 사이,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며 유·보 모두 각각의 법령·계획에 근거한 별개의 정책추진으로 현장의 혼선 야기 가능성

- (강점) 과거와 달리 교육 중심의 '관리체계 일원화'에 양 부처가 이미 합의(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·복지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중)

#### <시사점>

- ①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공유 ⇒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방향 제시
- ② 그간의 경험 상,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,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, '관리체계 일원화'와 '쟁점 논의'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

### Ⅲ. 비전 실현 10대 정책(안)

#### □ 유보통합 비전 체계도



## □ 비전 실현 10대 정책(안)

- 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**0세부터의 교육보육을 책임**지겠습니다.
- 2 영유아의 **특성과 발달의 연속성**을 고려한 **교육과정을 보장**하겠습니다.  
» 0~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
- 3 **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**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.  
» 안전 기반 강화, 놀이시설 개선 등
- 4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**양질의 급간식**을 **제공**하겠습니다.
- 5 **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**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.
- 6 **교사의 전문성과 역량**을 강화하여 **교육·보육의 질**을 높ی겠습니다.  
» 양성 교육과정 개편,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
- 7 영유아 교육·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**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**을 개선하겠습니다.
- 8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고, **입학·입소의 편의성**을 제고하겠습니다.  
» 데이터 기반 지역별 수급 관리 계획 마련 및 입소 대기 해소,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,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9 기관 이용에 따른 **비용 부담 걱정**을 덜어 드리겠습니다.  
» 단계적 학부모 부담 경감 추진
- 10 통합 모델 내 **기관 운영의 다양성·자율성**, 학부모의 **선택권**을 보장하겠습니다.  
» 기관 운영의 다양성 확보,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 확대

## IV. 유·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(안)

### 1 추진 목표

- 쟁점들을 책임 있게 조율하여, 유보통합 비전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, 조기 실현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기반 마련

• 대통령 (6.15) : “아동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,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완성”

- 이원화\*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,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·돌봄 정책 추진

\* 현재 유치원,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, 전달 체계 상이

	영유아 보육	유아교육
중앙	• 보건복지부(1국 3과, 보육정책관)	• 교육부(1과, 유아교육정책과)
지방	• 시·도청, 시·군·구청	• 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
지원 조직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, 보육진흥원, 육아종합지원센터	•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아교육진흥원
재원	• (중앙) 국고, 유특회계(국고) • (지방) 지방재정(국고대응, 자체사업)	• (중앙) 유특회계(국세 교육세) • (지방) 지방교육재정

### 2 추진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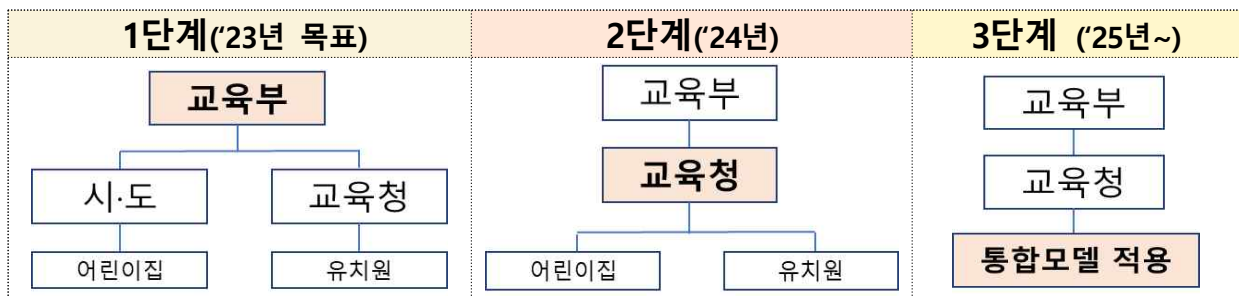
- 유치원, 어린이집 업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, 간담회(4.13, 5.9)  
※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업무 이해, 지역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 등
- 지방 공무원(시·도교육청, 시·도청 및 시·군·구청) 대상 설문조사(5.17~23.)  
※ 유·보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인식, 준비상황 및 요구사항 등 파악 목적
- 17개 시도교육청 면담,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관련 의견 청취(5~7월)
-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논의 지속,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권고

### 3 주요 추진 내용(안)

- **(기본방향)** 보건복지부, 시·도청, 시·군·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(정원, 예산 포함)를 **교육부, 시·도교육청으로 이관**
- **(이관범위)**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‘영유아보육’ 업무\*
  - \*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**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**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(예 : 아동수당, 부모급여)은 대상에서 제외
- **(이관전략)** 중앙 - 지방 순차 이관 (先중앙, 後지방) 추진
  - ※ (공무원 대상 설문조사, '23.5월) 추진 순서 관련, 응답자의 57.5% (특히, 시·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4.4%)가 “先 중앙 - 後 지방이 적절하다”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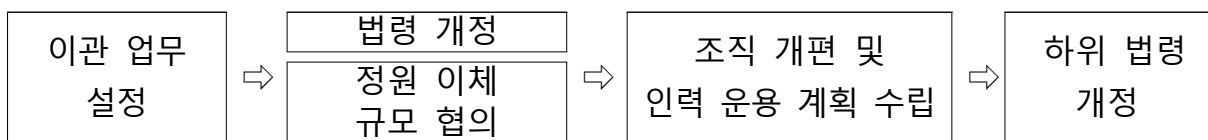
- **先 중앙** : 효과적 쟁점 조율 및 지방 이관 지원
- **後 지방** : 서비스 전달의 누수 방지, 상당 기간의 이관 준비 조치 필요

→ 중앙-지방 순차 이관에 따라, 유보통합 실행 모습은 3단계로 구분



※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, 1~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

#### ○ (이관절차)



- **(조치 필요 사항)** 중앙 실무협의체, 지방 추진단, 중앙-지방 4자 실무협의회\* 등으로 업무·재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 협의, 공동 대응

\* 교육부·복지부·시도교육감협의회·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, 4자 공동선언('23.7.14.)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(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)



## 4 재정 이관

### □ 원칙

- 현재 영유아, 부모, 교사,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'영유아의 최선의 이익' 원칙 준수
  - ※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
-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(1·2단계) 시에는 재정은 '이관'하며, 이후 통합 모델('23.12월 시안공개, '24년 말 확정) 적용 시, 재정 개편 추진

<현행>	<관리체계 일원화 추진>	<[3단계] 통합모델 적용>	
<b>현황('23)</b>	<b>이관·지원 방향</b>	<b>개편 방향</b>	<b>비고</b>
① 복지부 국고	① 교육부로 이관 [1단계]	①+② 별도 특별회계*	특별 회계 신설
② 유특회계	② 지속 지원(~'25)	* 가칭 '교육·돌봄 책임 특별회계'	
③ 시도, 시군구 예산	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[2단계]	③ 이관 후 지속 지원	유지
④ 시도교육청 예산	④ 지속 지원	④ 지속 지원	
		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	+α (추가 소요)

### □ 이관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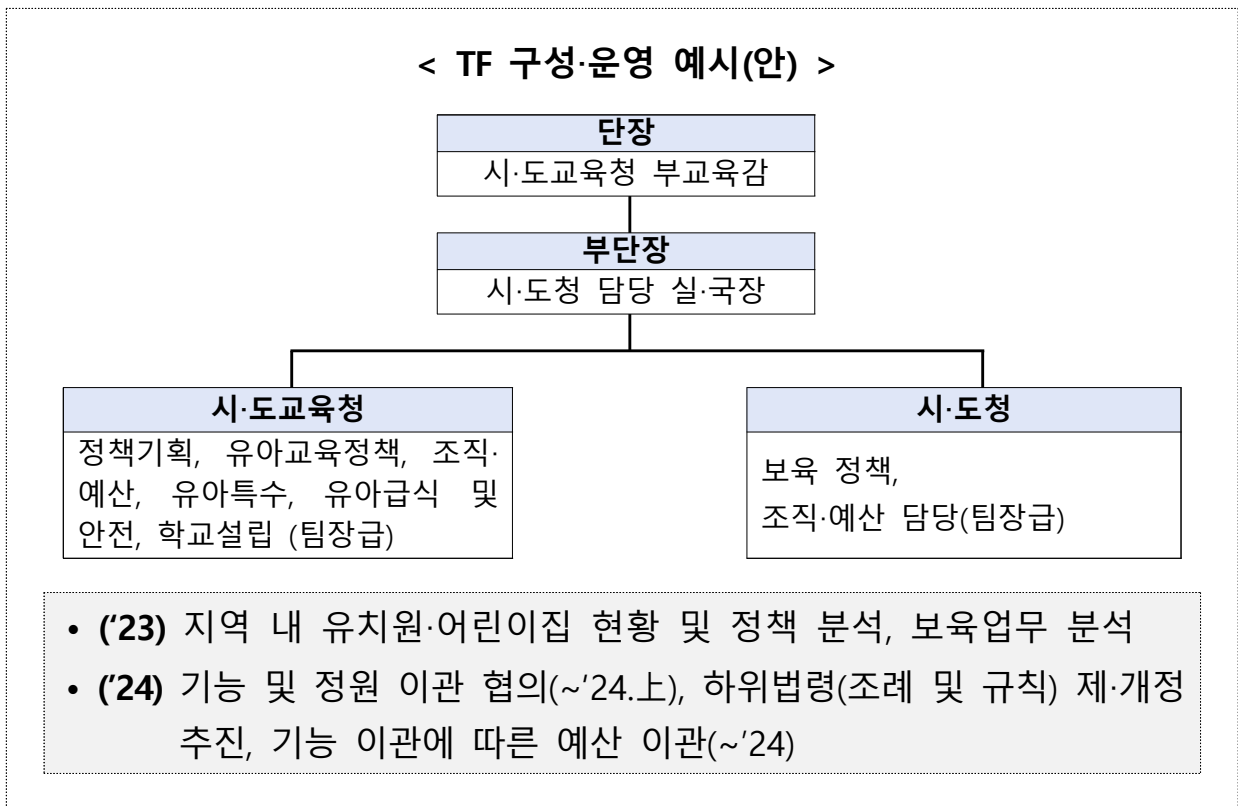
- (1단계: 중앙)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(소관 변경)
- (2단계: 지방)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(법률에 근거 명시)하고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(필수적 경비 여부 등)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
  - ※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, 지역협의체(TF) 논의 등을 통해 결정

## VI. 향후 일정(안)

- 중앙 단위 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: '23.7월~
- 지방 업무 이관 대비 TF 구성 현황 점검 : '23.8월 말(분기별)

□ **중앙·지방 공통 : 이관 대비 협의체(TF) 구성**

- **(중앙) 교육부 - 복지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계속 운영('23.5~, 매주)**  
 → 관계 법률 개정, 업무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 등에 협력 대응  
 ※ 필요 시, 행안부 등 관계 기관도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
- **(지방) 시·도교육청 - 시·도청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(TF) 구성·운영하여, 지방 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 대응('23.8~)**  
 ※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, 시·도교육청-시·도청 협업 지원 및 기능 이관 관련 애로 사항 확인 및 지원('24년도 총액인건비 등) 추진, 추진상황 점검 등



- **(중앙-지방) 4자 실무협의회\***를 중심으로 이관 대상 업무 설정, 자원 이관 및 정원 이체 등 세부 진행 사항 협의 진행  
 \* 교육부·복지부·시도교육감협의회·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, 4자 공동선언('23.7.14.)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(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)

## □ 중앙 단위 이관

① **(이관업무 설정)**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업무(1국 3과) 중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(교육부·복지부)

② **(법률 개정)** 「정부조직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개정 추진

- (정부조직법) '영·유아 보육'을 복지부 →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

- (영유아보육법) 법률 소관 부처 변경 및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 →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\*

\* 예시 : (15조) '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**보건복지부령**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' → '..... **교육부령**.....' 으로 주관(주체) 변경

※ 「정부조직법」 부칙을 통한 개정 추진

• 기능 이관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소관 변경에 따라, 중앙 단위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(제8조)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제7조), 어린이집 안전공제회(제31조의2)의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

- (기타)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\*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부수 법률 개정

\*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영아 표준보육과정을 포함

③ **(정원 이체 규모 협의)** 행안부 협의를 통하여, 정원 이체 규모 확정

④ **(조직개편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)** 교육부로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이후, 교육부 조직 개편\* 관련 후속 조치 추진

\*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도 조직개편 범주에 포함, 편제 재설정

⑤ **(하위법령 개정)** 「정부조직법」 등 개정 완료 이후, 교육부·복지부 직제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

## □ 지방 단위 이관

- ① **(이관업무 설정)** 법률 개정 추진 전까지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, 자치단체 → 시·도교육청으로의 이관 대상 업무, 수행인력 규모 확정

### < 이관 대상 공통업무 예시\*(안) >

\* 「영유아보육법」상 시·도, 시·군·구의 업무

- (어린이집 수급관리) 보육계획 수립(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포함),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·운영, 어린이집 인가, 공유재산의 대부 등
- (어린이집 지도·감독) 어린이집 지도 및 명령, 어린이집 점검·검사, 행정처분
- (보육료 지원, 보육서비스 가격 관리) 보육료 지급 관련, 수납한도액 결정
- (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) 평가, 공공형어린이집, 부모모니터링단,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,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
- (보육교직원 관리) 임면 등, 자격(3급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), 자격정지·취소
- (가정양육 지원) 가정양육지원, 보호자 교육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
- (보육정책 지원) 보육정책위원회, 보육실태조사

- ② **(법률 개정)** 「지방교육자치법」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등 개정 추진\*

\* 순차 이관 전략에 따라,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안 통과 후 즉시 추진

- 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) 시·도교육감의 사무에 ‘영유아 보육’을 추가
- 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) 교부금 지원 대상에 ‘영유아 보육’을 추가

- 기능 이관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소관 변경에 따라, 지방 단위 지원 조직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제7조)의 관할도 시·도교육청으로 변경

- ③ **(자치법규 개정)** 지역별 기능 이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 조례와 규칙 개정

- ④ **(기준인력 조정)** 자치단체-시·도교육청 간 기능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인력 조정방안 협의

- ⑤ **(업무이관 후속 조치)** 시·도교육청에 추가된 정원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 공무원 전입 또는 신규 채용으로 충원

※ 시·도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·도교육청으로 파견, 업무 안착 지원 필요

## □ 재정 이관

### □ 원칙

- 현재 영유아, 부모, 교사,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'영유아의 최선의 이익' 원칙 준수
  - ※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
-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(1·2단계) 시에는 재정은 '이관'하며, 이후 통합 모델('23.12월 시안공개, '24년 말 확정) 적용 시, 재정 개편 추진

### □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시(1·2단계) 이관 방안

- (1단계: 중앙)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(소관 변경)
- (2단계: 지방)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
  - ※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, 지역협의체(TF) 논의 등을 통해 결정

#### < 시·도, 시·군·구 예산 이관·지원 방향(안) >

현황	이관·지원 방향
① 국고 대응투자(법정)	① 시도교육청으로 이관
② 시도, 시군구 자체 사업	②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관범위 결정

- (①시·도, 시·군·구 국고 대응투자)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투자를 위해 시·도교육청으로 이관(법률에 근거 명시)
- (②시·도, 시·군·구 자체 사업)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은 사업의 성격(필수적 경비 여부 등)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통해 이관 범위 결정
  - ※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, 지역협의체(TF) 논의 등을 통해 결정